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898호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#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① 2016년 3월 9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"지난년도 체납액(이하 "체납액"이라 한다)"를 "지난년도 체납액(부과 해당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, 이하 "체납액"이라 한다)"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"부과하게 한"을 "부과한"으로 한다.

제3조제3호 중 "부과하게 한"을 "부과한"으로, "부과액"을 "징수액"으로 한다.

제3조제4호를 제5호로, 제5호를 제4호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"제3호"를 "제4호"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 중"주민등록번호"를 "생년월일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<신・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생 략)	제1조 (현행과 같음)
제2조(지급대상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1. 지난년도 체납액(이하 "체납 액"이라 한다)을 징수한 특별 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	제2조(지급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지난년도 체납액(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 과분은 제외하며, 이하 "체납액"이라 한다)
2. (생략) ③ ~ ⑦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3조(지급기준)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1. 제2조제1항에 따라 버려지거 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<u>부과</u> <u>하게 한</u>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	부과
2. (생 략) 3.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점용 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<u>부</u> 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<u>부과액</u> 의 100분의 5	2. (현행과 같음) 3

#### 현 행

- 4.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 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확인되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
- 5.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2조 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징 수촉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 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

#### 제4조(지급한도)

- ① 제3조제1호부터 <u>제3호</u>까지에 ①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.
- 1. ~ 2. (생 략)
- ② (생 략)

제5조~제9조 (생 략)

#### 개 정 안

- 4.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2조 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징 수촉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 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
- 5.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 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확인되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

제4조(지급한도)

<u>제4호</u>

- 1. ~ 2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~제9조 (현행과 같음)